약관 수정내용 비교(이용기관용)

	조항	기존	변경
1	제 2 조 【 용어의 정의 】		⑫ “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리스템”(이하 ‘통합관리시스템’이라 한다)이란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(출금이체 동의서) 사본을 보관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동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을 말한다.
2	제 2 조 【 용어의 정의 】		⑬”비정상 거래”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이용자가 CMS이용거래 시 납부자의 본인여부 확인 미흡으로 발생한 부당 거래와 분실, 도난, 해킹, 허위발급, 도용, 위조, 변조된 결제수단 및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 2. 납부자가 이용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정상적인 제공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본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납부자의 동의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
3	제 6 조 【 계좌의 지정 】	②이용자가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이는 회사가 3영업일(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)이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.	②이용자가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 이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.
4	제 7 조 【 이용요금 】	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사용료를 익월 5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)에 이용자가 신청한 사용료 납부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없이 CMS로 자동 출금한다.	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사용료를 익월 5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)에 이용자가 신청한 사용료 납부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없이 CMS로 자동 출금한다. 단,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, 회사는 이를 합산하여 CMS로 자동 출금할 수 있다.
5	제 7 조 【 이용요금 】	⑦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로 입금할 때 이용요금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.	⑦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, 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로 입금할 때 이용요금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.
6	제 8 조 【 거래내용의 확인 】	④회사는 CMS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, 보존한다. 1.CMS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.CMS이용거래의 거래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. CMS 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,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4.회사가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이용요금 5.납부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	④회사는 CMS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, 보존한다. 1.CMS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.CMS이용거래의 거래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. CMS 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,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의 일부 내역 4.회사가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이용요금 5.납부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
7	제 9조 【 손실부담 및 면책 】	⑤이용자는 CMS 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관련한 분쟁발생(본인확인 미흡, 부당인출 등)시 모든 책임을 진다.	⑤이용자는 CMS 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관련한 분쟁발생(본인확인 미흡, 부당인출, 비정상거래 등)시 모든 책임을 진다.
8	제 11조 【 이용자의 의무 】	④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은행명,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,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유선전화번호,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. 다만, 『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』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④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은행명,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유선전화번호,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. 다만, 『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』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9	제 11조 【 이용자의 의무 】	⑧이용자는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납부자의 ‘해지데이터’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	⑧이용자는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납부자의 '해지데이터'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1년간 출금거래내역이 없는 회원을 해지납부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.
10	제 11조 【 이용자의 의무 】		⑫이용자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납부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 시 가상계좌는 납부자의 소유가 아니며 이용자에게 납부하는 것임을 납부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

11	제 11조 【 이용자의 의무】		⑮이용자는 서비스시용신청시 제출한 이용목적으로만 CMS이용거래를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이용변경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.
12	제 12조 【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】		③항 15. 이용자가 최근 3개월간 CMS이용거래를 통한 출금신청이력이 없는 경우
13	제14조 【 부정접속의 방지 】	①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.	①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추가인증수단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.
14	제 17조 【 담보금의 설정 】	②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	②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단, 사전에 담보금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 자금의 정산이 보류될 수 있다.
15	제20조 【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】	①	① 8. 이용자는 CMS이용거래를 위하여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(이하 '통합관리시스템'이라 한다)에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(또는 제 18조 2항에 규정한 자동이체 동의 근거)를 등록하여야 하며, 이용자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. 단 회사는 이용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. 9. 회사는 CMS이용거래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16	제21조 【출금거래납부자의 보호】	① 1.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. 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.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출금한 경우	① 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1.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. 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동의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.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출금한 경우 4. CMS 이용거래내역이 비정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
17	제 21조 【출금거래납부자의 보호】	②회사는 출금거래 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,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	②회사는 출금거래 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혹은 비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,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18	제 21조 【출금거래납부자의 보호】	③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.	③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, 납부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제공(회사명,연락처, 주소등)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.
19	제 21조 【출금거래납부자의 보호】		⑤ 본 조항[21조 납부자의 보호]은 4장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, 5장 신용카드결제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20	제22 조 【 업무처리시간 】	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.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사전합의하여야 한다	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.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